

(사) 한국지반공학회 상별위원회 운영 규정

2005년 12월 1일 제정
2007년 4월 27일 개정
2010년 9월 10일 개정
2011년 9월 22일 개정
2016년 8월 22일 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지반공학회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(이하 본회)의 학회상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별위원회 구성)

- ① 상별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위원장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의 일인을 간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학술담당부회장이 맡는다.
- ③ 본회의 학술, 논문 담당 부회장 및 학술 전담이사, 기획 전담이사과 국문논문집 편집위원장, GEOE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. 단, 위원장이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 경우에는 중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.

제3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 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중요사항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의결한다.

제4조(상의 종류) 학회상에는 다음의 10종을 둔다.

- ① 공로상
- ② 학술상
- ③ 기술상
- ④ 저술상
- ⑤ 특별상
- ⑥ 학회장상

- ⑦ 국문 논문상
- ⑧ GEOE Awards(영문 논문상)
- ⑨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
- ⑩ KGS Lecture

제5조(수상자격) 수상자격은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공로상 : 본회 또는 지반공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. 단, 퇴임하는 회장은 제외
- ② 학술상 : 지반공학의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
- ③ 기술상 : 지반공학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
- ④ 저술상 : 지반공학 저술분야에 크게 기여한 회원
- ⑤ 특별상 : 본회의 운영재원 기부 또는 본회의 범사회적인 위상을 높인 회원 또는 단체
- ⑥ 학회장상 :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
- ⑦ 국문 논문상 : 본회 국문논문집에 독창적이고 우수한 지반공학 연구논문을 발표한 회원 또는 단체
- ⑧ GEOE Awards : 본회 GEOE 논문집에 독창적이고 우수한 지반공학 연구논문을 발표한 회원 또는 단체
- ⑨ 젊은 지반공학인 논문상 : 만40세 이하의 회원으로서 독창적이고 우수한 지반공학 연구논문을 본회 논문집에 발표한 개인
- ⑩ Korean Geotechnical Society Lecture(이하 KGS Lecture) : 지반공학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반공학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

제6조(수상 후보자 추천)

- ① 위원회는 매년 10월 학회지와 본회 홈페이지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지하고, 추천자를 받는다.
- ② 위원회는 1항을 고려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.

제7조(수상자 결정)

- ① 위원회는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- ② 전항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이사회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. 단, 이사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, 수상예정자를 변경하여 상정하지 않고 그 부분의 수상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.
- ③ 각 부문의 시상은 단독수상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. 단, 학회장상의 경우 수상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- ④ 각 부문의 수상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이중포상의 금지) 학회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9조(시상)

- ① 학회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.
- ② 학회상의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며 별도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- ③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

수상을 취소한다. 또한 시상

후 표절 조작 등을 포함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때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0조(징계)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제안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.

제11조(개정)

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세칙) KGS lecture 시행 세칙, 국문 논문상 시행 세칙, GEOE Awards(영문 논문상), 시행 세칙 젊은지반공학인 논문상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비밀준수 - 수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토론,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.
2. 수상자 공지 - 수상자 명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회 정기총회 개최 직전 이사회에서 인준 후에 본회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예외사항 - 본 운영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정관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.
4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16년 0월 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